투 자 설 명 서

유리 웰스 토탈 인덱스 주식투자신탁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2. 투자신탁의 종류 : 개방형, 추가형, 주식형, 종류형

3. 자산운용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

4. 판 매 회 사 명

판매회사	상담가능 전화번호
하나대투증권	1588-3111
부국증권	1588-7744
굿모닝신한증권	1588-0365
대구은행	1588-5050
경남은행	1600-8585
우리은행	1599-5000
우리투자증권	1544-00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10월 22일

6.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전국 판매사 본·지점	-
유리자산운용㈜ 본점	www.yurieasset.co.kr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urie
Asset Management
유리자산운용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핵심설명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추이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Ⅱ.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2. 장내파생상품 거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Ⅴ.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Ⅵ.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Ⅱ. 공시
1.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2. 정기공시 및 보고서
3. 수시공시
4. 의결권 행사
5. 기타장부/서류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쪽)

1. **명　　칭** :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유리자산운용(주)

Ⅱ 투자정보(☞본문 1~2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주요 재무지표를 가중하는 방식의 웰스인덱싱(펀더멘털인덱싱) 기법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퀀트액티브 전략을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KOSPI 및 KOSDAQ의 대/중/소형주 전영역을 대상으로 웰스 인덱스(펀더멘털인덱스) 포트폴리오를 구성 - 퀀트 액티브(Quant Active) 전략을 통해 일정 범위 내 초과수익 추구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7. 07월말)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한진규	39세	인덱스 운용 본부장	20개	12,086억	- KAIST 석사 - CFA	주식운용 :한국투자신탁 당사2000년2월~현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 해당사항 없음

Ⅲ 매입 및 환매관련 정보(☞본문 2~5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C2
수익증권 판매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제한없음	10억이상	50억이상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1)		납입금액의 1%	-	-	-
	환매 수수료1)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300%	연 0.300%	연 0.300%	연 0.300%
		판매회사보수	연 0.200%	연 0.700%	연 0.500%	연 0.200%
		기타보수	연 0.045%	연 0.045%	연 0.045%	연 0.045%
		보수합계	연 0.545%	연 1.045%	연 0.845%	연 0.545%
	기타비용		연 0.020%	연 0.020%	연 0.020%	연 0.020%
	총보수 및 비용비율 2)		연 0.565%	연 1.065%	연 0.865%	연 0.565%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 환매수수료는 30일 혹은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7.1.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중 매입·환매할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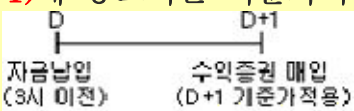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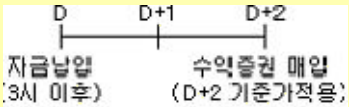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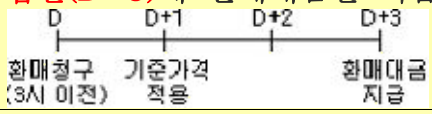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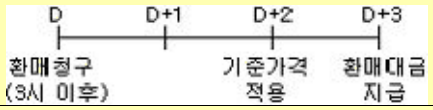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_____(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 Class C : 제한없음 ☐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 Class C1 : 납입금액 10억원 이상 ☐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 Class C2 :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3. 종류	증권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유리자산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9F (T.02)2168-7900)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년 08월 14일 최초설정 2008년 04월 29일 투자대상 변경(주식선물추가) 2008년 07월 09일 펀드명 변경 및 운용보수율, 판매보수율 인하
6.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주요재무지표를 가중하는 방식의 웰스인덱싱(펀더멘털인덱싱) 기법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퀀트액티브 전략을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자는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가격의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의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 KOSPI 및 KOSDAQ의 대/중/소형주 전 영역을 대상으로 주요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종목투자비중을 결정하는 웰스 인덱스 (펀더멘털 인덱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퀀트액티브(Quant Active) 전략을 통해 일정 범위 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웰스 인덱스 (펀더멘털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국내 전문 인덱스 공급자 FnGuide와의 웰스 인덱스 라이센스 계약에 기반하여 MF 웰스500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국내외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웰스인덱싱 전략 및 금융공학모형에 기반한 퀀트 액티브(Quant Active) 전략을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형 상품에 비해 다소 위험을 감수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1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위험등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의 'Ⅱ. 투자정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등급	등급 내용	등급 기준
1 등급	극히 높은 위험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에도 위험이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예)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펀드, 코스닥 전용 펀드, 이머징마켓 투자펀드, 부동산개발 펀드, 원금의 전액손실이 가능한 장외파생 상품 펀드
2등급	매우 높은 위험	단기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장기투자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 예) 일반적인 순수주식형
3등급	높은 위험	2등급과 4등급의 중간 수준으로서 신탁재산의 상당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예) 주식혼합형, 손실한도가 제한된 장외파생상품 펀드
4등급	중간 위험	단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장기투자 시 손실의 회복이 거의 확실한 경우 예) 채권혼합형 등, 잔존만기 5년이상의 채권형 펀드

5등급	낮은 위험	중장기 투자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예) 일반 채권형, 지수연계 채권형, 차익거래 추구형 등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변동성과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자산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 예) MMF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산정주기 : 매일 계산
(3) 공시시기 :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
(4) 공시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
(5)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회사의 홈페이지, 자산운용협회 등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7.7 월말)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한진규	39 세	본부장	20 개	12,086 억	KAIST 석사 주식운용 : 한국투자신탁 당사 2000 년 2 월~현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가. 연평균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Class A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납입시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유리웰스토탈인덱스주식투자신탁 Class C, C1, C2	판매수수료		-	-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유리 웰스토탈인덱스 주식투자신탁 Class A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2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0%	사유발생시 지급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565%	
유리 웰스토탈인덱스 주식투자신탁 Class C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0%	사유발생시 지급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065%	
유리 웰스토탈인덱스 주식투자신탁 Class C1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5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0%	사유발생시 지급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865%	
유리 웰스토탈인덱스 주식투자신탁 Class C2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2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0%	사유발생시 지급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565%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수수료 및 보수·비용	157천원	282천원	417천원	806천원
Class C	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천원	343천원	599천원	1,331천원
Class C1	수수료 및 보수·비용	88천원	278천원	486천원	1,081천원
Class C2	수수료 및 보수·비용	57천원	182천원	317천원	706천원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투자증권의 매매차익 등을 원천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서 세제상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일, 투자신탁재산에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과세가 된다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에 특례를 적용하여 매월 각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익월에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가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1)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 (2)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 매입가격 및 매입 방법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lass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2) Class C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Class C1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억원 이상** **(4) Class C2 수익증권 :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3)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 합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수령일
15시[오후3시] 경과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수령일

주1)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3)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1) 수익자는 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 수익자는 (1)에서 받은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의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 KOSPI 및 KOSDAQ의 대/중/소형주 전 영역을 대상으로 주요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종목투자비중을 결정하는 웰스 인덱스 (펀더멘털 인덱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퀀트액티브(Quant Active) 전략을 통해 일정 범위 내 초과수익을추구합니다. - 웰스 인덱스 (펀더멘털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국내 전문 인덱스 공급자 FnGuide와의 웰스 인덱스 라이센스 계약에 기반하여 MF 웰스500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국내외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실제운용여건과 지수산출 조건과의 차이, 시장상황변화, 초과수익추구를 위한 포트폴리오 변경, 목표지수와 실제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 수 차이 등으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실제 운용성과가 목표지수의 성과와 반드시 근접하게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초과수익 추구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실현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국내외 주식, 채권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주식	60% 이상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ㅇ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 사모사채 제외)
(3)	어음	40% 이하	ㅇ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신용등급 A3- 이상)
(4)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 거래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수익증권	5% 이하	ㅇ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7)	투자 증권대여	50% 이하	ㅇ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8)	장내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 이하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장외	총위험 평가액이 100% 이하	○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로서 금리스왑거래
(9)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10)	투자증권 차입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고유재산 거래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 (4), (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2), (3), (4), (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8)의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의미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 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Ⅱ.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및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2.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1.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Ⅳ. 매입·환매, 분배 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자금, 신분증, 도장(개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을 지참한 후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매입가격 및 매입 방법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3)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환매방법

구 분	환매청구방법
수익증권을 판매사에서 매입한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점에 환매청구
판매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실질수익자인 경우	판매회사 통해 증권예탁원에 환매청구
현물보유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

□ 환매시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주1)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 사유 및 절차	(가)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ㄱ.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ㄴ.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ㄷ.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ㄱ.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ㄴ.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 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다)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

	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ㄱ.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ㄴ.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ㄷ.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나)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3)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이익 등의 분배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1) 수익자는 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 수익자는 (1)에서 받은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유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국증권 9층
(02-2618-7000)

회 사 연 혁

일자	연혁
1998. 10	법인설립
1999. 08	자산운용업 등록(자본금 85억) - 금융감독위원회
2000. 03	투자자문업 등록 - 금융감독위원회
2000. 05	투자일임업 등록 - 금융감독위원회
2007. 07	현재 자본금 153억

2. 주요업무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96 조제 1 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④ 운용 및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제8기 '06.03.31	제9기 '07.03.31	항 목	제8기 '06.03.31	제9기 '07.03.31
유동자산	9,644	16,734	영업수익	6,578	9,321
고정자산	2,701	3,662	영업비용	4,873	6,122
자산총계	**12,344**	**20,396**	**영업이익**	**1,705**	**3,199**
유동부채	673	1,336	영업외수익	207	13
고정부채	17	231	영업외비용	41	22
부채총계	**690**	**1,567**	**경상이익**	**1,870**	**3,190**
자본금	10,300	15,300	특별손익	0	0
이익잉여금	1,129	3,331	법인세차감	539	975
자본조정	0	0	전순이익	0	0
자본총계	**11,429**	**18,631**	**당기순이익**	**1,331**	**2,215**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07월 31일 기준, 억좌)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합계
수탁고	10,019	23,373	4,859	2,946	3,595	44,79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운용 현황

소 속	성 명	생년	주요경력	비고
인덱스운용본부	한진규	1969년생	-KAIST 경영정책 석사 -한국투자신탁증권 -CFA	팀운용 총괄
운용본부 운용 규모 (2007 년 7 월 31 일 현재 순자산총액 기준) - 인덱스 운용본부 총 운용규모 : 인덱스형 : 12,086 억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대투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1588-3111)
회사연혁	1968.12. 한국투자공사 설립 2000.06. 대한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사명변경 2003.06. 대한투자증권주식회사로 사명변경
회사명	**부국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T.1588-7744)
회사연혁	1954.08. 설립 1997.05. 수익증권 매매업무 인가
회사명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T. 1588-0365)
회사연혁	1973.04 설립 2000.07 랩(Wrap) 판매개시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회사명	**대구은행**
주소 및 연락처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T. 1588-5050)
회사연혁	1967.10 창립 2006.06 친환경경영대상 : 기업부문 대상
회사명	**경남은행**
주소 및 연락처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T. 1600-8585)
회사연혁	1970.04 창립 2001.03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7.10 대한민국 가치창조경영대상 3년 연속 대상수상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T. 1599-5000)
회사연혁	1899.01 창립 1999.01 한빛은행 출범 2001.04 우리금융 그룹 출범

회사명	우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T. 1544-0000)
회사연혁	1969.01 창립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 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T.1566-2566) 회사연혁: 1961.08. 창립 2006.12.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 가입 2007.04.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회사연혁	2003 4월 회사 설립 2007 현재 자본금 25.5억
2.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입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자산운용회사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명 및 주소 등

구 분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설립일	2000.05.29	2000.06.20	2000.06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등록일	2000.07.01	2000.07.01	2004.06
연락처	02-399-3350	02-3770-0400	02-739-3590
자본금	50억원	30억원	55억

2. 주요 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V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수탁회사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증권예탁결제원(자산운용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로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열거된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가 아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또는 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 약관변경사항에	(1) 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

대한 공시	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나.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거나 신탁약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3)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수탁회사의 변경 다. 투자신탁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시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4)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이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

	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및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수탁회사의 변경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yurieasset.co.kr)·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_____

□ 판매일 : _____

□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유리 웰스 토탈 인덱스 주식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 유리 웰스 토탈 인덱스 주식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